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남북협력지구발 전기획단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합하면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9급 1명) 중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재배정하며, 통일 미래에 관한 전략의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부 장관 밑에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통일부 정원으로,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은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각각 재배정하여 활용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통일부의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

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남북회담본부의 정원 1명(8급 1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통일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북한인권기록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세분석국 및 인도협력국”을 “정세분석국, 인도협력국 및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3호 중 “통일정책”을 “국민 참여·소통을 통한 통일정책”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한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

- 국 간 협의·연락 및 합의서 체결·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의 운영·협의
 5.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반입 등의 승인
 6. 남북협력지구의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개발기획 및 유지관리 지원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위생·노동·환경·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11. 남북협력지구 관련 유관기관 협조
 12. 남북협력지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14.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5.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16.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제7장의2(제32조의2 및 제32조의3)를 삭제한다.
- 제33조제2항 후단 중 “27명”을 “29명”으로 한다.
- 제34조제2항 후단 중 “12명”을 “11명”으로 한다.
-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8조(통일미래전략기획단) ① 장관 밑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을 둔다.
- ②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통일 미래전략·구상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대북 협의의 기획·지원
 3. 통일 미래전략·구상에 대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
 4.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관계 부처·기관과의 협력·조정
 5. 통일 미래전략·구상 추진에 관한 국제 협력
 6.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및 홍보
- ④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통일미래전략기획단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은 별표 4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77”을 “291”로 하고, 일반직 계 “273”을 “28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9”를 “10”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258”을 “271”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67”을 “247”로 하고, 일반직 계 “267”을 “247”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9”를 “8”로, 3급 또는 4급 이하 “249”를 “230”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3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1명, 8
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
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
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
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
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 9명 중 2명(5급 1명, 7급 1명)
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 공무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7
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
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으로 각각 본다.

[별표 4]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 관련)

통일미래전략기획단(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9
일반직 계	9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8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소속기관)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 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 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 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사무처, <u>개성공단</u> <u>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북한인</u> <u>권기록센터</u> 및 한반도통일미래 센터를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 ----- <u>북한인권기</u> <u>록센터</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에 운 영지원과, 통일정책실, 교류협 력실, <u>정세분석국 및 인도협력</u> <u>국</u> 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 <u>정세분석국, 인도협력국 및</u> <u>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통일정책실) ①·② (생 략)	제10조(통일정책실)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12의2. (생략)	1. ~ 12의2. (현행과 같음)
13. <u>통일정책</u> 에 관한 국민 합의 기반 조성	13. <u>국민 참여·소통을 통한 통</u> <u>일정책</u> ----- -----

13의2. ~ 14. (생략)

<신설>

13의2. ~ 14.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한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연락 및 합의서 체결·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의 운영·협의
5.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반입 등의 승인
6. 남북협력지구의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개발기획 및 유지관리 지원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위생·노동·환경·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11. 남북협력지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남북협력지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

<u>제7장의2 개성공단</u> <u>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u> <u>제32조의2(직무) 개성공단 남북공</u> <u>동위원회 사무처는 개성공단 남</u> <u>북공동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u> <u>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u> 1. <u>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u> <u>분과위원회 운영 지원</u> 2. <u>개성공단 운영 관련 당국 간</u> <u>연락</u> 3. <u>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u>	<u>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u> <u>한 연락 및 지원</u> 15. <u>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u> <u>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u> <u>등에서 위임한 업무</u> 16. 「<u>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u> <u>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u> <u>서</u>」에 따른 개성공단 남북공 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의 개 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u><삭 제></u>		<u>현안 관련 당국 간 협의 및 개</u> <u>성공단 내 유관기관 협조</u> 4. <u>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u> <u>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u> <u>원</u> 5. <u>개성공단 관련 당국 간 합의</u> <u>사항 후속조치 실행 및 이행</u> <u>상황 점검</u> 6. <u>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u> <u>· 북측 사무처장 간 회의 진</u> <u>행 및 기록관리</u> 7. 그 밖에 개성공단 운영 관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 무 <u>제32조의3(사무처장) ① 개성공단</u> <u>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u> <u>처장 1명을 둔다.</u> ② <u>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u> <u>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u> <u>다.</u> ③ <u>사무처장은 통일부장관의 명</u> <u>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u> <u>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u>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u> <u>정원) ① (생 략)</u>	<u>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u> <u>정원) ① (현행과 같음)</u>
--	---	--	--	---

②

29명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11명

[illegible]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통일미래전략기획단) ① 장관 밑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을 둔다.

②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통일 미래전략·구상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대북 협의의 기획·지원
3. 통일 미래전략·구상에 대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

· 조정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 · 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 · 보안대책의 수립 · 시행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의 운영 · 협의 5.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 · 반입 등의 승인 6. 남북협력지구의 주민의 접촉 · 왕래에 대한 기획 · 조정 및 승인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 · 지원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개발기획 및 유지관리 지원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 · 위생 · 노동 · 환경 · 산업안전	4. 통일 미래전략 · 구상 관련 관계 부처 · 기관과의 협력 · 조정 5. 통일 미래전략 · 구상 추진에 관한 국제 협력 6. 통일 미래전략 · 구상 관련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및 홍보 ④ 통일미래전략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미래전략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4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 지원 11.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4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⑤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⑦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7</u>	<u>291</u>	+14
·	·	·	
·	·	·	
일반직 계	<u>273</u>	<u>287</u>	+14
고위공무원단	<u>9</u>	<u>10</u>	+1
3급 또는 4급 이하	<u>258</u>	<u>271</u>	+13
·	·	·	

[별표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7</u>	<u>247</u>	-20
일반직 계	<u>267</u>	<u>247</u>	-20
고위공무원단	<u>9</u>	<u>8</u>	-1
3급 또는 4급 이하	<u>249</u>	<u>230</u>	-19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2368